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일몰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관세법인 등록 신청” 조항은 일몰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는 “비규제” 판정을 받아 해당 조항의 규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일몰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1. 제5조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신청: 2014년 1월 1일	<삭 제>
2. (생략)	2. (현행과 같음)